

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포항시장 (2023. 11. 3.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6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-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(2023. 11. 14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이유

-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, 포항시 환경정책과에서 「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」 제8조의3(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·제거·처리 등의 지원)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
- 공동주택과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별도의 지원사업은 하지 않으며, 그 내용이 「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」와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4. 관련법령

- 「석면피해구제법」
- 「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」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최상용)

-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중복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

- 종합검토 결과,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포항시 환경정책과에서 「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」 제8조의3(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·제거·처리 등의 지원)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본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7. 토론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